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

약 식 명 령

사 건 [REDACTED] 강제추행

피 고 인

주 형 과 피고인을 벌금 2,000,000(이백만)원에 처한다.

부 수 처 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100,000(일십만)원을 1
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.

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